

第104回(臨時會)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 第2號(附錄)  
**本會議會議錄**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事務局

目 次

1.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 1面  
 2. 서울특별시종로구유료광고에관한조례(안) ..... 6面  
 3. 서울특별시종로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10面  
 4. 서울특별시종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14面  
 5. 2000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 20面  
 6.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26面

1.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2000. 9. 6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시 민 행 정 위 원 회

1. 審査經過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0년 6월 21일 · 종로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00년 8월 28일
- 다. 상정일자 : 제104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2000. 9. 4) 시민행정위원회 상정 · 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 행정관리국장 김 현 식)

가. 제정이유

동사무소 기능전환 확대실시에 대비하여 사전에 기반을 구축하고 시범실시중인 주민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정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2000. 1. 13) 준칙에 의거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주민자치센터 (안 제3장)
  - 주민자치센터는 동장책임하에 운영, 민간위탁 및 사용료 징수근거 (안 제7조3항, 안 제10조2항)
  - 강사 및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보상 근거(안 제13조)

- 년간 운영계획 및 운영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안 제14조)
- 주민자치위원회 (안 제3장)
  - 주민자치센터 운영등에 관한 심의기구(안 제15조)
  - 공무원은 주민자치센터위원회 위원장이 될 수 없도록 함
  -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실비보상(안 제23조)

다. 제정근거

-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준칙(행정자치부) - 서울특별시 행정 13101-76(2000. 1. 13)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보고자 : 전문위원 강 광 일)

가. 제정이유

- 동사무소 기능전환 확대실시를 위하여 주민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정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행정자치부 준칙(2000.1.13)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자치센터의 동사무별 명칭은 동장 및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구청장이 하도록 함(안 제4조제2항)
- 자치센터는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기능 및 주민자치기능을 수행토록 함(안 제5조)
- 자치센터의 운영은 동장이 하되 필요한 경우 동장,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회비 등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 자치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5조, 제16조)
-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토록 함(안 제17조제1항)
- 위원은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덕망이 있는 자를 동장이 위촉하도록 함(안 제17조제2항)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중에서 선출하도록 함(안 제17조제4항)
-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다. 타구의 조례 제정 현황

- 25개 구 중 11개 구가 제정 완료

○ 주민자치센터의 명칭

┌ 주민자치센터 : 6개 구(중구, 중랑구, 은평구, 서대문구, 송파구, 관악구)

- └ 주민(문화)복지센터 : 4개 구(강북구, 양천구, 강서구, 영등포구)
- └ 동민의 집 : 1개 구(성동구)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안 제17조관련)

- └ 구의원은 위원회의 상임고문 또는 당연직 고문으로 함 : 7개 구
- └ 구의원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함 : 1개 구(강북구)
- └ 구의원은 구청장이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 : 1개 구(성동구)
- └ 안 제17조제4항 후단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를 삭제하고 구의원  
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음 : 1개 구(은평구)
- └ 행자부 준칙(안) 원안 통과 : 1개 구 (송파구)

※ 고문(顧問) : 자문에 응하여 의견을 말하는 직무 또는 그 직책에 있는 사람

라. 동사무소 기능전환 추진현황

가) 추진일정

- 동기능전환 기본계획 시달(행자부) : '99. 2. 5
- 시범동 선정(명륜3가동, 송인1동) : '99. 3. 12
- 시설 개보수 : '99. 5 ~ 7월
- 주민자치센터 개소식 : '99. 7. 30
- 확대시행지침 시달(행자부) : 2000. 3. 6
  - 2000. 7 ~ 9월중 시행토록 함
- 우리 구 확대시행계획 : 조례 제정 및 시설 개보수 후 시행

나) 시범실시 현황

- 인력조정 : 동별 동장 포함 7명 존치
- 업무조정
  - 동 존치업무 : 주민등록, 호적, 민방위, 사회복지, 순찰, 서무회계, 통반장, 자치센터 관리 등 170건
  - 구 이관업무 : 주택, 건축, 토목, 하수, 세무, 교통, 청소, 통계, 건설, 지역경제, 병사 등 485건
- 자치센터 운영 : 취미교실, 인터넷방, 마을문고, 어린이집, 체력단련실 등

마. 검토의견

- 주민자치란 지방행정을 지방주민 스스로의 책임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하는 바 축소된 동사무소의  
기능과 아울러 동장이 운영하는 주민자치센터는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의 운영 등 생활  
체육·취미교실과 교양강좌를 주로 시행하게 될 것이므로 조례 제명 및 조문에서 「주민자치센터」  
로 표현한 것이 적절한지 이에 대한 검토와
- 자치센터의 운영은 동장이 하되(안 제7조), 자치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  
사무소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두도록 하였던 바 이는 자치센터가 주민 각계각층의 의견을 끌고루 반  
영하여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균형있는 주민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 등에 대한 검토(안 제17조)

바. 관련법규

○지방자치법 제8조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95조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①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4. 質疑 및 答辯 要旨

(질의자 : 현 수 한 위원, 홍 기 서 위원, 정 태 순 위원)

(답변자 : 행정관리국장 김 현 식, 총무과장 이 동 명, 동기능전환추진기획단 주 요 택)

문) 각 동 개보수시설비로 1억 정도를 균등히 책정·배정하여 동청사 보수 등 시설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동청사 관리상태도 동마다 서로 틀리고, 또한 일괄적 지시에 따라 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운영된다면 동자치센터로서의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각 동 실정에 맞게 운영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동자치센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답) 현재 각동 개보수비로 내려간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각 동 동일한 반복적 불필요 프로그램이 없도록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등 운영의 묘를 살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자치센터에 대하여 우리구에서도 구청장협의회에서 반대의견을 표명했으나 관철되지 않은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문) 주민자치센터 시범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동의 주민자치위원회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다시 구성해야 하는 것입니까?

답) 조례의 내용대로 하게 됩니다.

문) 주민자치센터 시범동에는 비품 등 물품구입을 위하여 작년에 예산을 편성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예산집행이 안되고 있는 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답) 모든 동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일부 지연되고 있는 듯 합니다.

문) 동기능전환추진기획단 발족후 주민의견을 수렴한 적은 있습니까?

답) 기획단 구성후 지속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조례가 시행된다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실 동자치센터라는 것이 동사무소를 없앤다는 뜻이 아니라 최소의 행정만을 남겨둔 채 남은 공간을 활용하여 주민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5. 討 論 要 旨 : 최강순 위원 부결안 동의

○ 본 위원회에 상정된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2000년 9월 2일 의원간담회와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한 결과,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동사무소에 두는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을 중심으로 지역주민들에 의하여 운영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조례안을 보면 모든 것이 동장에 의하여 운영되어 나가도록 구성되어 있어 본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토록 동의

6. 審 査 結 果 :

○본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함.”

7. 少 數 意 見 的 要 旨 : 없 음

8. 其 他 必 要 한 事 項 : 없 음

2. 서울특별시유료광고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2000. 9. 6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시 민 행 정 위 원 회

1. 審査經過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0년 8월 25일 · 종로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00년 8월 29일

다. 상정일자 : 제104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2000. 9. 4) 시민행정위원회 상정·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 행정관리국장 김 현 식)

가. 제정이유

민선자치시대와 더불어 세계화, 지방화가 급속하게 진전되면서 우리구의 경쟁력 확보와 효율적인 재정확충의 일환으로 유료광고를 실시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은 물론, 광고료 징수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유료광고의 적용대상을 정함(안 제3조)
- 광고주를 수시로 모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4조)
- 공익에 반하는 내용에 대한 유료광고의 제한규정을 둠(안 제5조)
- 유료광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7조)
-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수당지급 근거 마련(안 제11조)

다. 제정근거

- 「종로 사랑지」 유료광고 게재계획 구청장방침(기예12452, 2000. 4)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보고자 : 전문위원 강 광 일)

가. 제정 이유

- 세외수입 확충을 위하여 구에서 발행하는 홍보책자 등 각종 간행물과 종로사랑지 등에 유료광고를 실시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코자 함

나. 주요골자

○ 유료광고의 적용대상을 규정함(안 제3조)

- 종로사랑지,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영상 등
- 홍보책자, 팸플렛, 전단, 입장권, 고지서 등을 포함한 각종 간행물
-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으로써 종로구 유료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 대상

○ 구청장은 광고를 게재하고자 할 경우 수시로 광고주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 공익에 반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유료광고를 제한하도록 함(안 제5조)

○ 유료광고에 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종로구 유료광고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6조)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
-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
- 당연직 위원 : 기획예산과장, 총무과장, 재무과장, 사회복지과장, 주택과장, 건설관리과장
- 위촉직 위원 : 구의회 의원, 광고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기타 주민 대표 등

○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다. 검토의견

○ 지방세 수입은 징수대상이 법령에 엄격히 규정되어 있어 세수증대에 한계가 있으나 각종 사용자, 수수료, 과태료 등 세외수입은 집행부의 의지에 따라 어느 정도 세수증대가 가능한 세입임

○ 이와 관련 구에서 발행하는 각종 간행물 등에 광고를 적극 유치함으로써 세외수입 증대에 다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제1호에서 「간행물」이라 함은 「인쇄물 또는 영상의 총체」로 정의하여 「영상」을 간행물의 일종으로 하였으나, 안 제3조(적용대상) 제1호에서는 「영상 등」을 제2호에서는 「각종 간행물」이라고 하여 영상과 간행물을 별개의 객체로 표현하였는 바 이는 조문간 용어 사용의 일관성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

※ 간행물 : 인쇄하여 발행한 출판물

영 상 : 광선의 굴절 또는 반사에 의하여 비추어진 물상

○ 안 제7조 유료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에서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하고 당연직인 공무원이 과반수인 8명이 참여토록 하였는 바 심의의 객관성을 위해 바람직한 구성인지 이에 대한 검토

4. 質疑 및 答辯 要旨

(질의자 : 흥 기 서 위원, 선 상 선 위원)

(답변자 : 행정관리국장 김 현 식, 기획예산과장 임 질 택)

문) 안 제7조의 유료광고심의위원회 구성을 보면 15명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는데, 당연직이 8명, 위촉직이 7명으로 되어 있어 결국은 집행부의 의견대로 위원회가 이끌려 나가게 되어 있는 바, 이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반대로 당연직을 7명으로, 위촉직을 8명으로 하여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답) 당연직을 8명으로 한 것은 국별 주무과의 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는 각 국 별로 참여를 시킴으로써 해당 국의 광고에 대하여 정확한 견해를 제시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문) 안 제2조의 정의에서는 '간행물'을 '인쇄물 또는 영상의 총체'라 정의 하여 '영상'을 간행물의 일종으로 정의하였으나, 안 제3조 적용대상에서는 영상과 간행물을 별개의 객체로 표현하였는데, 이는 일관성이 없으므로 용어의 통일을 기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 적용대상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세분화한 사항으로 이해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5. 討 論 要 旨 : 흥기서 위원 수정안 동의

○ 안 제2조제1호 후단의 "인쇄물 또는 영상의 총체를 말한다"를 "인쇄물의 총체를 말한다"로 수정

6. 審 査 結 果 :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안)은 원안가결 : 수정(안) 별첨

7. 少 數 意 見 的 要 旨 : 없 음

8. 其 他 必 要 한 事 項 : 없 음

서울특별시중로구유료광고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발의년월일 : 2000. 9. 4

발 의 자 : 시민행정위원회

1. 수정이유

- 안 제2조에서는 '간행물'을 '인쇄물 또는 영상의 총체'로 정의하여 '영상'을 간행물의 일종으로 정의하였으나, 안 제3조 적용대상에서는 영상과 간행물을 별개의 객체로 표현하였는 바, 이는 조문 간 용어사용의 일관성이 없으므로 이를 통일하고자 제2조제1호의 내용 수정

2. 수정골자

- 안 제2조제1호 후단의 "인쇄물 또는 영상의 총체를 말한다"를 "인쇄물의 총체를 말한다"로 수정

3. 서울특별시종로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0. 9. 6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시 민 행 정 위 원 회

1. 審査經過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0년 8월 25일 · 종로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00년 8월 28일

다. 상정일자 : 제104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2000. 9. 4) 시민행정위원회 상정·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 행정관리국장 김 현 식)

가. 개정이유

동 기능전환 확대시행지침(행정자치부)에 의거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대상자의 선정이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종로구새마을장학생선정위원회를 신설하여 위원회 정원, 자격, 임기, 의결정족수, 선발절차 등을 규정하고, 동문고기능강화 및 동분회의 활성화로 문고역할이 강화됨으로써 새마을문고지부장에게 종로구새마을장학생선정위원회 자격을 부여, 추천할 수 있도록 하여 문고지도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 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제4조 추천권자의 문고지부회장을 추가하여 새마을문고지도자 자녀의 장학금 지급을 구체화
- 제5조(선정)의 종로구새마을장학생선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장학생을 선정하도록 운영절차를 규정

다. 개정근거

- 구청장 방침 제643호(2000. 6. 20)
- 동 기능전환 확대시행 지침(행정자치부 자제13101-168, 2000. 3. 6)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보고자 : 전문위원 강 광 일)

가. 개정 이유

- 새마을장학생 선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새마을문고 구 지부회장에게도 대상자 추천권을 부여 하는 등 지급대상자 선정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임

나. 주요골자

관련조문	개정내용	현행	개정(안)
제4조	추천권자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새마을부녀회장	새마을문고 지부회장 추가
제5조	선정절차	구 지회장이 교육위원회의 의견을 참작하여 선정	구 지회장이 새마을장학생 선정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다. 새마을장학금 지급현황

- 지급대상 : 지역 지도자 수의 7% 이내
- 지급금액 : 공납금 전액,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만 지급 가능
- 연도별 지급현황

(단위:천원)

연도별	예산액	지급인원		지급금액	1인당 지급액	비고
		총				
'99년도	36,228	총	57	35,140		
		중학생	13	4,727	363,600원	유공 4 우등 9
		고등학생	44	30,413	691,200원	유공 19 우등 25
'98년도	57,793	총	62	56,821		
		중학생	15	8,712	580,800원	유공 6 우등 9
		고등학생	47	48,109	1,023,600원	유공 24 우등 23

라. 검토의견

- 구 지부장이 새마을장학생 선정시 교육위원회의 의견을 참작토록 한 것은 추상적인 규정이므로 선정위원회를 구성 심의토록 한 것은 보다 공정한 선정을 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됨

4. 質疑 및 答辯 要旨

(질의자 : 홍기서 위원, 현수한 위원, 김정대 위원)

(답변자 : 행정관리국장 김현식, 문화진흥과장 이수걸)

문) 새마을 단체에는 새마을금고와 새마을자연보호회도 있는데, 왜 이번 개정안에는 새마을문고만 추가하고 이들은 빠졌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답) 이번에 제4조에 문고지부회장을 추천권자로 추가한 것은 조례 제1조에 새마을지도자에 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어 새로이 추가하게 된 것입니다.

문) 사실 문고의 기능이 책을 주민에게 빌려주고 나중에 반납 받는 등의 역할만 하고 있는데 반하여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 새마을자연보호회는 지역사회를 위한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또한 새마을금고도 IMF등 어려운 시기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음에도 이들을 추천권자에서 누락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 문고지부회장을 추가하는 것은 추천권자를 추가하는 것이지 반드시 문고 자녀를 장학생으로 선발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한, 새마을자연보호회는 사회단체이기 때문에 추천권자로 추가하기는 어렵습니다.

5. 討 論 要 旨 : 흥기서 위원 수정안 동의

○제4조 중 “새마을지도자 종로구협의회장(이하 “구협의회장”이라 한다)과 종로구새마을부녀회장(이하 “구부녀회장”이라 한다)”를, “새마을지도자 종로구협의회장(이하 “구협의회장”이라 한다)·종로구새마을부녀회장(이하 “구부녀회장”이라 한다)·새마을문고종로구지부회장(이하 “구문고지부회장”이라 한다)·새마을금고협의회장(이하 “금고협의회장”이라 한다)”로 수정

6. 審 査 結 果 : 수정가결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안)은 원안가결 : 수정(안) 별첨

7. 少數意見의 要旨 : 없 음

8. 其他 必要한 事項 : 없 음

서울특별시종로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발의년월일 : 2000. 9. 4

발 의 자 : 시민행정위원회

1. 수정이유

- 이 조례(안) 제4조의 장학생 추천권자로서 새마을문고종로구지부회장을 추가한다고 하였으나, 새마을단체로서 새마을금고의 경우에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는 바, 새마을문고종로구지부회장 외에 장학생 추천권자로서 새마을금고협의회장을 추가하도록 수정

2. 수정일자

- 제4조 중 “새마을지도자 종로구협의회장(이하 “구협의회장”이라 한다)과 종로구새마을부녀회장(이하 “구부녀회장”이라 한다)”를 “새마을지도자 종로구협의회장(이하 “구협의회장”이라 한다)·종로구새마을부녀회장(이하 “구부녀회장”이라 한다)·새마을문고종로구지부회장(이하 “구문고지부회장”이라 한다)·새마을금고협의회장(이하 “금고협의회장”이라 한다)”로 수정

4. 서울특별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0. 9. 6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1. 審査經過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0년 8월 25일 · 종로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00년 8월 28일
- 다. 상정일자 : 제104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임시회 제 1차(2000. 9. 4) 재무건설위원회 상정 · 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 재무국장 동 연 호)

가. 개정이유

-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국가유공자등예우에관한법률개정으  
로 신설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7급에 대한 면허세 감면과
- 2000년 ASEM회의, 2001년 한국방문의 해, 그리고 2002년 월드컵 대회 등 각종 국제행사에  
대비하여 깨끗한 도시경관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을 효과적으로 추  
진할 수 있도록 대상건물에 대한 재산세와 사업소세를 경감하고자 하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  
가가 통보됨에 따라 우리구 세감면 조례중 관련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으로 신설된 상이등급 7급에 대하여 면허세 감면
-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32조제1항에 의거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이 완료·통보된  
건축물에 대하여 당해연도 재산세와 사업소세를 각각 50% 경감

다. 개정근거

- 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통보(행정자치부 세제13400-411, 2000. 4. 6)
- 옥외광고물 특별정비를 위한 지방세감면지원 계획 시달  
(서울특별시 세정13400-520, 2000. 5. 3)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보고자 : 전문위원 장 소 수)

가. 주요골자

- 2개 조문의 개정사항임

개정조문	개 정 내 용	대상세목	적용시한
제2조제2항	국가유공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을 →1급 내지 7급으로(7습 자구 수정)	면허세(전액)	
제19조의4	옥외광고물 특별정비법 완료자 감세 조항 조문 신설	재산세, 사업소세 (50%)	2002년 12월 31일 까지 한시 적용

나. 개정배경

< 제2조제2항 > 국가유공상이등급 7급자까지 확대 적용

- 국가유공자등에우뒀지원에관한법률이 '99년 8월 31일자로 개정되면서 상이등급이 1등급(7급) 추가 신설되어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
- 국가보훈처에서 새로운 상이등급자(7급)에게도 지방세 감면을 확대해주도록 행정자치부에서 요청함에 따라 검토하게 된 사항으로
- 국세인 특별소비세에서도 상이등급에 관계없이 모두 면제를 하고 있어 법간 형평성 등을 고려 감면을 추진하는 사안임

< 제19조의4 신설 >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 2000년 ASEM 회의, 2001년 한국방문의 해, 2002년 월드컵대회 등 각종 국제행사에 대비하여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키 위한 유인책으로 2년간 한시적 운영
  - 2000. 5. 3 시 특별계획 시달(특별정비 실시, 지방세 감면 추진)
  - 2000. 5. 15 옥외광고물 정비실시자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하는 조례안에 대한 허가 신청(구→행자부)
  - 2000. 6. 5 허가(행자부→구)

다. 심의참고자료

< 조세의 구분 >

○ 국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교통세, 재평가세, 부당이득세, 전화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15종)

○ 지방세

- 시세

- ┌(보통세)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주민세, 담배소비세, 경주마권세, 주행세, 농지세, 도축세
- └(목적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 구세

- ┌(보통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
- └(목적세) 사업소세

< 지방세 감면 근거법규 >

▶ 감면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법

○ 지방세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 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정하여야 한다.

▶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 근거

○ 제2조제2항 관련

행정자치부 문서번호 세제 13400-411(2000.4.6)

○ 제19조의4 규정 신설 관련

행정자치부 문서번호 세제 13400-763(2000.6.5)

< 자동차면허의 종류와 세액 >

종 별	배 기 량	세 액
1 종	3,000cc 이상 승용차	45,000원
2 종	1,600cc 이상 ~ 3,000cc 미만	36,000원
3 종	1,400cc 이상 ~ 1,600cc 미만	27,000원
4 종	1,400cc 미만 승용차 및 승용차 이외의 자동차	18,000원
5 종	경형자동차	12,000원

< 국가유공장애인 현황 및 소유 자동차 현황 >

구 분	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대상인원	154	3	5	14	9	37	80	6
차 량 계	84	2	1	14	5	28	32	2
승 용 차	78	2	1	13	5	26	30	1
승합·화물차	6			1		2	2	1

<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지역 현황 >

1999.12.1 고시

대상지역	연 장	대 상			감세예상액(단위:천원)		
		건물	업소	광고물	계	재산세	사업소세
인사동길	600m (관훈 123-4 ~ 인사 43)	82동	371개	1,002개 (정비대상 836개)	75,439	73,100	2,339

라. 심의관련근거법규

< 국가유공자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1. 순국선열
2. 애국지사
3. 전몰군경
4. 전상군경
5. 순직군경
6. 공상군경
7. 무공수훈자
8.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
9. 4·19혁명 사망자
10. 4·19혁명 부상자
11. 순직공무원
12. 공상공무원
13.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국무회의 심의 통과)
14.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15.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 상이등급의 구분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등급	신체상이정도(요약)
1 급	양쪽 팔·다리 절단자
2 급	한 팔, 한 다리가 무릎관절 이상 절단자
3 급	한 팔이 팔꿈치 이상 절단자
4 급	한 팔, 한 다리가 무릎관절에 근접해서 절단자
5 급	한 팔, 한 다리가 팔꿈치관절 이하에서 절단자
6 급	양쪽 발가락이 중절부 이상 상실된 자
7급(신설)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 발가락을 상실한 자

< 옥외광고물 등의 특별정비법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 >

○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32조제1항

- ①시장은 도시경관의 향상, 미풍양속의 유지, 공중에 대한 위해의 방지 또는 시민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영 제12조제1항 및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 등의 특별정비를 할 수 있으며 특별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수 있다.

< 특별소비세법에서 장애인에 대하여 등급에 상관없이 면제하고 있는 근거 >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조건부면제)

-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5.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이 구입하는 것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1조(장애인의 범위)

①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중 장애인

마. 검토의견

○ 장애 7급까지의 면세 확대 개정(안)은 특별소비세의 감면사항 등과 형평성이 유지되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자에 대한 감세개정(안)은 행자부의 허가사항으로 국가적 정책사업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각 구의 세수 결함은 시의 특별교부금으로 보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4. 質疑 및 答辯 要旨

(질의자 : 정 병 환 위원, 안 재 흥 위원, 오 금 남 위원, 이 형 술 위원, 오 필 근 위원, 홍 승 태 위원, 이 현 구 위원)

(답변자 : 재무국장 동 연 호, 세무1과장 조 조 익)

문) 옥외광고물 특별정비법의 범위에 해당하는 옥외광고물은 무엇입니까?

답)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광고는 모두 옥외 광고물에 해당되며, 이 조례(안)에서 감면대상은 도시계획과의 옥외광고물 규격에 맞게 정비한 자에게 2002년까지 한시적으로 재산세, 사업소세를 50% 감면해주는 것입니다.

문) 우리구는 인사동길만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지역으로 지정되었는 바, 그 사유는 무엇이며 대학로나 역사탐방로도 지정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문)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지역은 시에서 지정된 것이며 대학로와 역사탐방로도 지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이를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5. 討 論 要 旨 : 없 음

6. 審 査 結 果 : 원안가결

7. 少數意見의 要旨 : 없 음

8. 其他 必要한 事項 : 없 음

서울특별시중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발의년월일: 2000. 5. 23

발 의 자: 재무건설위원회

1. 수정이유

- 이 조례(안) 제13조의 2 신설 단서규정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은 수당은 평균액으로 지급되는 개념이며, 서울특별시중로구통·반설치조례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용어의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고, 예산편성지침의 과목 운영규정에서도 보상금 표현이 타당하므로 수정되어야 함.

2. 수정골자

- 제13조의2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

5. 2000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2000. 9. 6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1. 審査經過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0년 8월 24일 · 종로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00년 8월 28일

다. 상정일자 : 제104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임시회 제 1차(2000. 9. 4) 재무건설위원회 상정 · 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 재무국장 동 연 호)

가. 제정이유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서울특별시종로구공유재산관리조례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 및 관리처분에 대한 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교남동 청사, 명륜3가 경로당, 삼청테니스장 부지를 매입하여 주민 편의시설 및 복지시설 확충

다. 관계법규

○ 지방재정법제77조, 동법시행령제84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서울특별시종로구공유재산관리조례제36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보고자 : 전문위원 장 소 수)

가. 변경요청사유

○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의 경우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규정에 따라 '99년 11월 19일에 의결한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일부를 추가하는 변경안임

나. 추가승인 요청사항

(단위:천원)

취득사유별	재산의 표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소유자
	지 번	지목	지적(m <sup>2</sup> )			
경로당	명륜1가 70-1	대	142 (43평)	312,400	하반기	명륜 새마을금고
	명륜1가 70-1	건물	247 (74평)	61,750	하반기	명륜 새마을금고
교남동 청사부지	행촌동 180-10 의 5필지	대	584.5 (177평)	1,331,180	하반기	이정철 외 5인
삼청테니스장 부지	삼청동 1번지	대	740.5 (224평)	354,552	하반기	국(산림청)

다. 관련법률

<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 근거법률 >

○ 지방재정법 제77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의회의 승인대상 재산규모 >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제2항

②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한다.

1.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 1억원 이상(자치구 기준), 처분의 경우 1억원 이상(자치구 기준)
2. 면적에 있어서는 취득의 경우 1,000m<sup>2</sup> 이상, 처분의 경우 1,000m<sup>2</sup> 이상

라. 공유재산의 구분

구분	재산의 종류	대상 재산	처분 여부
행정재산	공용재산	구·동청사 등	불가
	공공용재산	공중화장실, 노인정 등	불가
	기업용재산	시설관리공단청사 등	불가
보존재산	보존재산	문화재	불가
잡종재산	잡종재산	위 재산 외 재산 (위 재산이 용도폐지될 경우)	가능

마. 대체시설이 필요한지를 위한 판단(현 시설분석)

< 명륜3가 현 경로당 현황 >

- 명 칭 : 명륜3가 경로당
- 위 치 : 명륜3가 1-1057
- 대 지 : 32평(시유지)

- 건 물 : 1층 19평(무허가)
- 건립년도 : 1975년도
- 이용조건
  - 명륜3가 가장 고지대에 위치(성곽 옆)
  - 차도에서 급경사 계단 약 10m 올라가서 진입
  - 동사무소 앞 평지에서 약 20~30분 소요
  - 경로당 이용노인이 접근 곤란
- 취득하고자 하는 건물 이용조건
  - 평지이며, 동 중앙에 소재 이용 편리
  - 사무실 건물이므로 경로당으로 개조가 용이

< 현 교남동청사 >

- 위 치 : 교북동 35-5
- 대 지 : 144평
- 건 평 : 철근콘크리트 총 124평
  - ┌ 지하 22평 - 회의실, 창고
  - ├ 1층 45평 - 민원실, 주민등록실
  - ├ 2층 46평 - 사무실
  - └ 3층 11평 - 식당, 중대본부
- 건립년도 : 1975년도 (1996년 일부 증축)
- 주차대수 : 4대
- 입지여건
  - 동 한쪽에 치우쳐있고
  - 진입로가 6m 정도이며 주차가 어려워 차량이용 주민 불편
  - 청사가 노후되고 다소 협소함

< 삼척테니스장 국유지 >

- 위 치 : 삼척동 1번지(삼척근린공원 내)
- 면 적 : 224평
- 소 유 : 국(관리청-산림청)
- 우리 구 이용현황
  - ┌ 테니스장 2면 설치('99. 9. 14)
  - └ 관리 :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유료 운영

국유지 매입 진행경위

- 1999. 9. 14 테니스장 설치
- 2000. 6. 8 국유지 무상귀속이나 무상대부 요청  
(구→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
- 2000. 6. 13 불가통보(서울국유림관리소→구)
- 2000. 6. 29 무상귀속이나 대부요청 2차(구→건교부, 산림청)
- 2000. 7. 6 불가통보(산림청→구)
- 2000. 7. 21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산림청→구, 금액 15,624천원)

국유재산법 관계규정 검토

○국유재산법 제26조(사용료의 면제)

행정재산 등을 사용 수익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2. 행정재산 등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공용·공공용 또는 비용리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국유재산법 제44조(양여)

①잡종재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여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본 부지매입의 경우 향후 일정

○국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산림청→재정경제부)

○용도폐지(산림청) -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이 됨

○재산이관(산림청→재정경제부)

\* 법 제32조 잡종재산은 총괄청이 처분

○매각 방침 결정

○지가 감정 및 매각

바. 검토의견

○삼청테니스장 내 국유지 매입 건은 매입이나 유상사용 시 선례가 되어 유사한 점용사례에 대한 향후 대처가 곤란한 점 등이 있어 심도있는 심의를 요함

4. 質疑 및 答辯 要旨

(질의자 : 정 병 환 위원, 안 재 홍 위원, 오 금 남 위원, 이 형 술 위원, 홍 승 태 위원, 이 현 구 위원, 오 필 근 위원)

(답변자 : 재무국장 동 연 호, 세무1과장 조 조 익)

문) 교남동청사를 신축하면 현 교남동청사의 향후 처리계획은 무엇입니까?

답) 동청사 용도가 폐지되면 잡종재산으로 되어 매각할 수도 있으나, 현 시점에서 매각대상은 아닙니다.

문) 현재 교남동청사가 144평이고 신축청사는 177평으로 되어 있는 바, 겨우 33평을 늘이기 위해 토지매입비 13억여원, 건설비 37억여원 등 50억여 원의 많은 예산을 책정한다는 것에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답) 현재 교남동청사는 한쪽에 치우쳐있고 노후, 협소하며 기정예산에 일부 책정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문)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경로당을 고지대에서 저지대로 설치하는 것에는 찬성하나 19평을 74평으로 늘이는데 따른 시설운영비와 예상 수요인원이 적정한지와 토지매입비 3억 7,000만원과 시설비 5,000여 만원을 들여서 굳이 도로변의 비싼 부지를 매입해야만 합니까?

답) 명륜3가 경로당은 고지대이다 소규모시설로 열악하여 이용주민들의 불편이 많았으며 경로당 부지 확보를 위한 주변의 장소물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경로당의 규모를 크게 하면 주변의 다른 소규모 경로당 수를 줄여서 통합할 수 있으니 예산절약의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문) 삼청테니스장 부지사용에 대한 2000. 7. 21. 산림청의 1,562만 4,000원의 변상금부과에 대한 조치 사항은 무엇이며 삼청테니스장을 건립하기 전에 무상사용 승인을 먼저 받았어야 하지 않습니까?

답) 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한 절차의 잘못은 시인하며 추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산림청에 서면과 구두로 무상사용, 무상양여 협의요청을 계속 하였는데, 국유재산법 제26조에 해당되는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료의 면제는 도로, 하천, 제방 등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할 때는 대부가 가능하나 테니스 등 특정다수인이 특정목적용을 위해 사용할 때는 사용료 면제가 안된다고 회신받은 바 있습니다. 우리가 매입하게 되면 변상금 부과는 안되도록 산림청과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5. 討 論 要 旨 : 안 재 흥 위원 승인(안) 동의

- 관련 지방재정법과 종로구구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취득대상 재산은 집행부의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전절차나 가격, 조건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나 이를 결하였으며
- 삼청테니스장 부지매입 건은 국유재산 무상사용등 사전협의를 충분히 이행치 못하여 약 4억원의 추가 소요예산 부담을 초래한 점과
- 교남동 청사부지 매입건은 공시지가가 m<sup>2</sup>당 160만원임에도 보상예상가를 이보다 1백여 만원 높게 책정하여 불필요한 의혹을 야기한 점
- 명륜3가 경로당 이전을 위한 건물구입은 경로당 특성상 대로변이 아니어도 상관없음에도 대로변 건물을 매입함으로써 예산부담을 초래한 점 등이 지적되어
- 승인을 보류함이 타당함에도 구정의 잘못으로 주민의 불이익이 초래될 점을 감안하여 최대한 저가로 매입할 것을 조건부로 승인할 것을 동의

6. 審 査 結 果 : 원안가결

7. 少數意見의 要旨 : 없 음

8. 其他 必要한 事項 : 없 음

서울특별시종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발의년월일: 2000. 5. 23

발 의 자: 재무건설위원회

1. 수정이유

- 이 조례(안) 제13조의 2 신설 단서규정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은 수당은 평균액으로 지급되는 개념이며, 서울특별시종로구통·반설치조례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용어의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고, 예산편성지침의 과목 운영 규정에서도 보상금 표현이 타당하므로 수정되어야 함.

2. 수정골자

- 제13조의2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

6.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0. 9. 6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1. 審査經過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0년 8월 25일 · 종로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00년 9월 4일

다. 상정일자 : 제104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임시회 제 2차(2000. 9. 5)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상정 · 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 행정관리국장 김 현 식)

가. 제안이유

- 서울시에서 추가로 교부되는 조정교부금을 가용재원으로 당초 예산사업에 대한 중간점검을 통해 여건변화에 따른 보완, 수정요인을 반영하고
- 효율적인 재원활용을 통해 역점투자사업을 조기에 완료하여 구민편익 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단위:천원)

구 분 회계별	예산액	기 정 예 산 액			금회추경	증가율 (%)
		계	당초예산	제1회추경 및 간주처리		
계	167,250,608	160,715,377	145,796,190	14,919,187	6,535,231	11.4%
일반회계	129,631,499	123,096,268	111,421,101	11,675,167	6,535,231	
특별회계	37,619,109	37,619,109	34,375,089	3,244,020	-	-
의료보호	3,315,246	3,315,246	3,314,523	723	-	-
주 차 장	34,303,863	34,303,863	31,060,566	3,243,297	-	-

3. 専門委員 検討報告の 要旨

(보고자 : 전문위원 장 소 수, 강 광 일)

가. 추정 개요

< 총예산 규모 >

(단위:백만원)

구 분	당초예산	1회 추정		1회추경 후 예산	2회 추정		2회추경 후 예산	'99대비 증감률 (%)
		간주처리 (1회~6회)	추경재원		간주처리 (7회~10회)	추경재원		
계	145,796	2,915	8,009	156,720	3,995	6,535	167,250	13.4
일반회계	111,421	2,794	5,489	119,704	3,392	6,535	129,631	14.0
특별회계	34,375	121	2,520	37,016	603		37,619	11.3

< 금회 추정재원 >

○조정(보통)교부금 추가 교부액 : 6,535백만원

(단위:백만원)

당초 교부액	1회 추정 감액	금회 추가교부액	예 산 액	전년 대비
23,669	-408	6,535	29,796	43.2%

< 세입된 간주처리 내용 >

(단위:천원)

회계별	일 자	목	사 업 내 용	배정액
총 계	총 계			3,995,592
일반회계	소 계			3,392,616
	6. 1	국고보조금	홍인지문 보수공사비 등	74,836
		시비보조금	공중화장실 시설개선비	19,046
	6. 8	조정교부금	생명의 나무 1000만 그루 심기 사업비	26,857
		국고보조금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비	27,150
		시비보조금	'99체납시세 징수 인센티브 등	553,712
	7. 5	조정교부금	의약분업 비상대책비	17,338
		국고보조금	아동급식 지원	17,465
		시비보조금	건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비	2,000,000
	8. 11	조정교부금	특별검사원(제3건축사) 사용검사	2,800
		국고보조금	주민자치센터 시설사업비 등	240,552
		시비보조금	주민자치센터 시설사업비 등	412,860
특별회계	소 계			602,976
	6. 8	시비보조금	공동주차장 부지매입비	600,000
	7. 5	시비보조금	주차수요관리 전산입력 인건비	2,976

< 세출예산 재원 배분 >

(단위:백만원)

합 계	경 상 비			투자사업비	경정예산
	소 계	법정필수경비	경상적경비		
6,535	848	499	349	6,050	-363

< 기정예산 감액경정 >

(단위:백만원)

목	사업내용	기정예산	감액경정	예산액
시설비 및 부대비	5·6가동 청사 부지 매입비	1,819	-363	1,456

※ 부지매입비 : 1,256백만원

설 계 비 : 200백만원

< 위원회별 세출예산 규모 >

(단위:백만원)

위 원 회 별	추경예산액	점유율(%)	비 고
계	6,535	100	
운 영 위 원 회	55	0.8	
시민행정위원회	3,576	54.7	
재무건설위원회	2,904	44.5	

나. 검토의견

- 43쪽 구정홍보 전광판 설치비 1억 7,000만원은 구청 정문 주변에 홍보용 전광판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인 바 설치계획 및 투자효과 등에 대한 검토와
- 45쪽 하단 제2별관 옥상 증축비로 5억 7,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는 바 증축 목적, 증축에 따른 건물안전도, 산출근거 등에 대한 검토
  - \* 제2별관 건축일 : '77. 10. 23
- 48쪽 하단 삼청테니스장 토지매입비 3억 5,400만원은 작년에 증설한 삼청테니스장 2면 393평 중 224평(740.5m<sup>2</sup>)이 산림청 소유 국유지(지목:대지. 용도:공원용지)이므로 이를 매입하기 위한 예산인 바 매입의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
- 58쪽 하수시설물 보수에 시설비 20억을 편성하였고, 2000년 본예산에 상하수예산이 5억 4,340만 8천 원이 편성되어 총 25억 4,300만원 정도의 치수예산이 편성되었는 바 치수사업은 직접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사안이므로 타 예산에 우선하여 편성하여야 할 것인 바 중기 재정계획상 2000년 50억 투입계획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어 필요사업이 누락된 사례가 없는지에 대한 검토
- 60쪽 상단 청사 내 화단정비 및 민원인 편의시설 공사비 6,000만원은 제1별관 앞 의회계시판이 있는 곳을 현재 정비해놓은 소방본부 벽쪽에 설치한 편의시설과 유사한 휴식공간을 조성코자 하는 사안임. 본 지역은 우리 구의회 계시판의 증설설치 계획지역이므로 이와 연관하여 검토를 요함

다. 예산심의와 관련된 제법규

<중기재정계획 >

- 지방재정법 제16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예산편성지침에서도 이를 활용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재정투·융자 심사 >

- 지방재정법 제30조제2항에서  
10억 이상의 신규 투·융자사업은 투자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고 심사요건에서는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이라야 심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간주처리 >

지방재정법 제36조와 예산총칙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예산편성 후 회계년도 중에 내시되는 보조금, 교부금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하는 제도

< 조정교부금 >

서울특별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

○설치목적 (조례 제1조)

자치구간 재정 불균형을 조정

○조정교부금 재원 (조례 제4조)

서울시가 징수하는 당해년도 취득세와 등록세 합산액의 50/100 해당액

○교부금의 종류 (조례 제3조)

▶특별교부금 : 교부금 총액의 10/100 범위 내에서 운용

- 배정대상

1. 재해로 인한 특별재정수요
2. 청사, 공공시설의 신설 보수 등으로 특별재정수요
3.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사용용도 : 배정 목적대로 사용

▶보통교부금 : 교부금 총액의 90/100 이상

- 배정대상 : 자치구별 조정률 산출공식에 의거 산출률대로 배정

- 사용용도 : 제한 없음

▶조정률 산출측정기준 : 의원 정수, 행정구역 면적, 인구수, 가구수, 구 공무원수, 동 공무원수, 보건소 공무원수, 과세건수, 저소득가구수, 환경미화원수, 녹지대면적, 가로 등 보안등수, 도시계획 면적, 시가화 가능면적, 도로의 면적, 도로시설물의 연장, 빗물펌프장수, 하수도의 연장, 민방위대원수

4. 質疑 및 答辯 要旨 :

(질의자 : 홍 승 태 위원, 김 정 대 위원, 이 동 규 위원, 이 현 구 위원, 유 찬 종 위원, 정 병 환 위원, 김 복 동 위원, 정 태 순 위원)

(답변자 : 행정관리국장 김 현 식, 재무국장 동 연 호, 생활복지국장 이 병 만, 도시관리국장 하 철 승, 건설교통국장 오 중 석)

문) 구청 제2별관 옥상증축건에 대한 안전도는 검사했습니까?

답) 전문지식이 있는 직원들이 검사한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문) 구청 제2별관 옥상증축비 5억7천여만원 중 1억3천8백여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공사가 가능합니까?

답) 감액된 예산으로 공사가 어렵습니다.

문) 제2별관 옥상을 증축 후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답) 지역주민과 직원들의 건강증진과 후생복지차원에서 체육관을 만들어 스포츠 시설을 설치하는 것임

니다.

문) 의회청사 협소로 인한 의원들의 부족한 사무실 공간에 대해 고려해보았습니까?

답) 소방본부가 이전하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문) 구립어린이집 오피스갯복합기 구입후 운영비는 지원합니까?

답) 구청에서 별도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문) 혜화여고 주변 도로개설공사비 6억원 중 2억1천만원이 감액된 것은 과다계상으로 된 것은 아닙니까?

답) 과다계상된 것은 아니며, 사업의 시급성으로 명륜동 도로개설비에 계상한 것입니다.

문) 사직공원의 대지의 소유자는 누구입니까?

답) 서울시입니다.

5. 論 要 要 旨 : 정 병 환 위원 수정(안) 동의

【 감 액 현 황 : 4건 323,000천원 】

- 내무행정 시설비 구청화장실 보수 20,000천원
- 내무행정 시설비 제2별관 옥상증축 33,000천원
- 공원녹지관리 시설비 청사내 화단정비 및 민원인 편의시설공사 60,000천원 - 건설관리 시설비 혜화여고주변(10-15-15-13)도로개설공사 210,000천원

【 증 액 현 황 : 5건 323,000천원 】

- 지방의회운영 자산취득비 프린터구입(2대) 3,000천원
- 공원녹지관리 재료비 구기동 벚꽃길조성 수목구입 20,000천원
- 공원녹지관리 시설비 와룡공원 급수시설설치비 30,000천원
- 건설관리 시설비 도로관리-관내도로 보수공사 60,000천원
- 건설관리 시설비 명륜4가 206-155간 도로개설공사 210,000천원

6. 審 査 結 果 :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안)은 원안가결 - 수정(안) 별첨

7. 少 數 意 見 의 要 旨 : 없 음

8. 其 他 必 要 한 事 項 : 없 음

1. The first part of the document discusses the importance of maintaining accurate records of all transactions and activities. It emphasizes that this is crucial for ensuring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in the organization's operations.

2. The second part outlines the various methods and tools used to collect and analyze data. This includes the use of surveys, interviews, and focus groups to gather qualitative information, as well as the application of statistical techniques to quantitative data.

3. The third part of the document focuses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collected data. It provides a detailed analysis of the findings, highlighting key trends and patterns that have emerged from the research. This section also discusses the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for the organization's strategy and operations.

4. The final part of the document concludes with a summary of the key findings and a set of recommendations for future research and action. It stresses the need for ongoing monitoring and evaluation to ensure that the organization remains responsive to changing circumstances and continues to improve its performance.